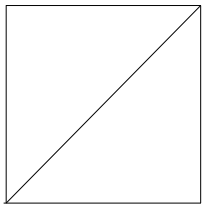

의안번호	제 2016 - 5호
보 고 연 월 일	2016. 3. 28. (제71차 정기회의)

보고안건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목 차

Ⅰ. 제100차 전체 회의 ····· 1

1. 일시・장소 ····· 1

2. 참석자 ····· 1

3. 주요 안건 ····· 1

4.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논의결과 ····· 1

5.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논의결과 ····· 3

6.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논의결과 ····· 6

7.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결과 ····· 7

Ⅱ. 향후 일정 ····· 9

별첨 김현아, “근로기준법 양형기준 설정 검토Ⅳ”

황병헌,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

안종열,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

김현아,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 검토”

안종열, “교통범죄 양형기준안 의견검토”

I. 제100차 전체회의

1. 일시 · 장소

○ 일시 : 2016. 3. 7.(월) 15:00 ~ 18:00

○ 장소 : 대법원 1601호 회의실

2. 참석자(13명)

○ 수석전문위원, 강수진, 김현아, 김혜경, 노수환, 박수정, 박지선, 범현, 안종열, 이용, 이진국, 최준혁, 황병헌 전문위원

○ 운영지원단장(간사)

3. 주요 안건

○ 근로기준법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회신 결과 검토

4.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현행안을 수정하기로 한 사항

(1)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음(의견일치)

○ 동종의 강제근로 · 중간착취의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특별가중인자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특별가중인자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가중 ⇨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는 것으로 현행안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양형인자의 정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동종의 강제근로·중간착취의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그 밖에 다음과 같이 제시된 의견들에 관하여 논의결과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의견 일치됨(구체적 검토내용에 관하여는 주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1) 강제근로·중간착취 유형

(가) 양형기준 설정대상 관련

○ 근로자폭행은 폭력범죄 양형기준으로 의율 가능하므로, 별도의 양형기준이 필요하지 않음

○ '휴업기간 중 해고', '근로시간 위반'을 대상범죄로 포함

(나)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관련

○ '최저임금법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을 별도 유형으로 분류하고, 중간착취와 강제근로를 분리해서 유형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 '강제근로, 중간착취' 유형의 형량을 높이고 강제근로를 중간착취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

(다)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관련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중간착취)'를 감경사유에서 제외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감경인자에서 제외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한 지시를 넘어 고용관계에서의 지시가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강요된 상태에까지 이른 경우에 한하여 감경요소로 고려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특별감경인자에서 제외

(2) 임금 등 미지급 유형

(가)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관련

○ 소유형 분류 기준 금액을 더욱 세분화하거나 근로자 1인의 입장에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분류

○ 형량 상향조정 의견

- 1유형은 ‘6월~1년’, 2유형은 ‘8월~1년6월’, 3유형은 ‘1년~2년’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
- 3유형의 기본영역의 하한을 1년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의견
- 3유형의 가중역역의 상한을 2년6월에서 3년으로 상향하자는 의견
- 벌금형 비중이 높으므로 벌금형 양형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

(나)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관련

○ ‘미지급 근로자 수’ 또는 ‘미지급 기간’을 양형인자나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고려

○ 임금 등 미지급 유형의 양형인자인 ‘형사처벌 전력’과 관련하여 공소기각 또는 공소권 없음 전력도 포함시켜야 함

○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대표자의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질적으로 임금지급의 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감경요소로 반영

○ 심신미약의 적용 가능성 낮으므로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함

○ 집행유예 참작사유인 ‘피해회복 노력 없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일부 피해 회복된 경우’가 너무 포괄적이므로 일응의 미지급 임금 범위를 특정하여 구체화 할 필요 있음

5.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현행안을 수정하기로 한 사항

(1) 일반가중인자인 '단속 회피 시도'의 양형인자의 정의에 "위의 요소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추가 (의견일치)

○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중 치밀한 계획 범행, 조직적인 범행, 첨단시설을 이용한 범행 등은 단속회피 목적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일반가중인자인 '단속회피 시도'에도 해당됨

○ 위와 같이 두 개의 인자를 거듭 적용할 경우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에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현행안 수정

[양형인자의 정의] **단속 회피 시도** ○ 다만, 위의 요소가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그 밖에 다음과 같이 제시된 의견들에 관하여는 논의결과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의견 일치됨(구체적 검토내용에 관하여는 주무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1) 양형기준 설정대상 관련

○ 석유사업법 제44조 제6호, 제44조 제10호(영업시설 설치·개조 등) 범죄를 양형기준 설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2)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관련

○ 용량·용도위반 판매도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와 같이 판매량이나 이익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체계적임

○ 가짜석유제품 제조·판매 등 유형에서 일반규모와 대규모를 구분하는 50만 리터라는 기준이 적절한지 의문

(3)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관련

○ 대규모 또는 첨단 시설을 설치하여 범행한 경우 중에서 석유사업법 제44조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해당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음

○ 석유사업법 제44조 제5호, 제6호, 제10호 위반 범죄(중지명령위반 등, 영업시설 설치·개조 등)는 별도 구성요건으로 도입된 석유사업법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일반가중인자가 아닌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

○ 형사제재와 행정제재의 병과는 사실상 이중의 제재이므로 행정제재를 받은 경우 이를 감경인자로 고려하는 것을 제안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와 '단순 가담'은 실행행위 분담의 소극성, 경미성을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유사하여 이중 감경의 우려가 있음

○ '범행으로 인하여 중대한 폐해가 야기된 경우'에서 '폐해'라는 문구는 직접적 피해 이외에 간접적, 이차적인 피해까지 포괄하는 내용인지 불분명함

○ 정상적인 석유제품 판매업자가 가짜석유제품 제조업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 이는 오히려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일반감경인자인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는 재검토를 요함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는 그 의미가 불분명하므로 정의규정을 제시할 필요

○ 일반감경인자인 '적발 후 바로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와 일반가중인자인 '단속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시도'의 구분이 불명확함

(4) 기타

○ 석유사업법위반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사기죄는 법조경합에 해당한

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별도의 죄로 보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

6. 과실치사상범죄 양형기준안 논의 결과

가. 현행안 수정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된 부분

○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유형의 **기본영역**의 권고형 범위를 '8월 ~ 1년6월'에서 **'8월 ~ 2년'**으로 수정

- '교통사고치사'에 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결과를 반영하면서,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기본영역의 권고형량 범위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

○ 아래와 같은 '사망 ⇔ 중상해' 사이의 불균형 조정

- **치상+'중상해'** ⇨ 2유형의 가중영역 **'8월–2년'**
- **치사** ⇨ 3유형의 기본영역 ⇨ **'8월–1년6월'**

○ 수정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 6월	4월 - 10월	8월 - 2년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4월 - 10월	8월 - ~~1년6월~~2년	1년 - 3년

나. 그 밖에 다음과 같이 제시된 의견들에 관하여는 논의결과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의견일치(구체적 검토내용에 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1) 유형분류 및 형량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 법정형 등을 감안해서 형량을 상향조정함이 타당함

○ 소유형 2, 3, 4의 법정형을 감안해서 형량범위를 상향조정함이 타당함

○ 교통범죄 양형기준의 교통사고치상죄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와 일치시킬 필요

(2)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의 양형인자 명칭 변경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 내지 집행유예 주요 부정적 참작사유로 삼는 것이 바람직함

○ '주의가 필요한 취약한 피해자(부정적)',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긍정적)' ⇨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추가

○ 특별가중인자인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 중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는 적용 제외

○ 특별가중인자인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유형의 정의에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시설에 피해자가 관여하여 그 시설의 위험성을 피해자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경우' 제외

○ 특별가중인자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 재해가 연간 3건 이상 발생한 경우' 추가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특별감경인자)'의 정의 구체화

○ 자수 또는 내부고발(긍정적), 범행 후 구호 호송(긍정적) ⇨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추가

7. 교통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논의 결과

가. 현행안 수정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된 부분

○ **교통사고 치사** 유형의 **기본영역**의 권고형 범위를 '8월 ~ 1년6월'에서 **'8월 ~ 2년'**으로 수정

○ 아래와 같은 '사망 ⇔ 중상해' 사이의 불균형 조정

- **치상** + '**중상해**' ⇨ 소유형 1의 가중영역 : '**8월–2년**'

- **치사** ⇨ 소유형 2의 기본영역 : **'8월-1년6월'**

○ 수정안

▪ **일반 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교통사고 치상	- 8월	4월 - 1년	8월 - 2년
2	교통사고 치사	4월 - 1년	8월 - ~~1년6월~~2년	1년 - 3년

나. 현행안 수정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

○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별도의 유형 분류 내지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관계기관 의견조회 결과에 대하여,

- 현행안을 수정하여 특가법 제5조의11에 해당하는 경우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특별가중인자**로 설정하자는 견해(김현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와 **현행안을 유지**하자는 견해(안종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가 제기됨
- 다만, 이 부분 쟁점은 ① 전문위원 회의와 양형위원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양형기준안으로 의결된 것이고, ② 관계기관 의견조회에서 제시된 의견의 내용도 이미 검토되었던 범위를 벗어나지 않음
- 따라서 **전문위원단의 입장을 다시 취합하지 않고**, 위와 같이 **견해 대립이 있었다는 내용만 보고**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음

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이 제시된 의견들에 관하여는 논의결과 현행안을 유지하기로 의견일치(구체적 검토내용에 관하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유형의 형량범위 상한의 상향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일반감경인자에서 삭제한 부분과 관련하여, '적극적 구호조치를 한 경우'로 변경하여 일반감경인자로 유지함이 상당함

○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양형인자로 추가

II. 향후 일정

○ 전문위원 제101차 전체회의는 2016. 4. 4.(월) 개최하기로 함